

June 05, 2014

대주주(대표이사)가 주식 전환이익을 얻은 경우 완전포괄주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가 가능한지 여부

P사는 2005년 A벤처캐피탈과 전환사채인수계약을 체결한 후 A에 대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였는데, P사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인 원고는 계약조건에 따라 1년 후 전환사채 중 70%를 양수하였고, 양수시로부터 2년 후 전환권을 행사하였습니다(전환권 행사). P사는 2006년 B증권과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한 후 B증권에 대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는데, 원고는 B증권으로부터 위 사채를 취득한 SPC로부터 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 중 50%를 취득하였고, 양수시로부터 2년 9개월 후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였습니다(제1 신주인수권 행사). 또한, P사는 2008년 C은행과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한 후 C증권에 대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는데, 원고는 C은행으로부터 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 중 50%를 취득하였고, 양수시로부터 2년 후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였습니다(제2 신주인수권 행사).

피고는 원고가 전환권 및 각 신주인수권을 행사함으로써 P사로부터 당시 주가와 행사가액의 차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증여세 3,500만 원, 18억 원, 66억 원을 각각 부과하였고(이하 이 사건 제1, 2, 3처분이라 합니다),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위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이를 기각하였습니다.

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는데, 동 소송에서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에 대하여 ‘(1) 원고는 구 증권거래법상 인수인에 해당하는 A벤처캐피탈, SPC, C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전환사채 및 각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근거한 것으로 적법하다. (2) 설령 이들이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원고는 P사로부터 전환사채 및 각 신주인수권증권을 직접 취득할 경우 부담하게 될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제3자를 경유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감소시켰는바, 완전포괄주의 증여규정에 따라 원고가 직접 P사로부터 주식을 인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상증세법 제2조 제4항,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근거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. (3) 원고는 이 사건 전환사채 및 각 신주인수권증권을 행사함으로써 특수관계자인 P사와 거래를 통해 이익을 분여받은 것이고 동 거래는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’고 주장하였습니다.

원고를 대리하여 본 소송을 수행한 법무법인 세종은 (1)과 관련하여 원고가 전환권 및 각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한 거래상대방들은 증권거래법상 ‘인수인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고가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기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고, (2)와 관련하여 A벤처캐피탈, B증권, SPC, C은행은 원고가 증

여세 부담을 회피하는 데 관여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거래상대방으로서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원고로부터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뒤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 중 일부를 원고에게 매도한 것이므로 완전포괄주의 증여규정에 의하여 원고가 직접 P사로부터 주식을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며, (3)과 관련하여 원고가 이 사건 전환사채 및 각 신주인수권증권을 인수, 행사할 때 거래상대방은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자가 아니고, 원고가 전환사채 및 각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, 취득, 행사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전환사채 및 각 신주인수권을 취득하고 행사한 데에는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의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, 1심 법원은 이 같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.

최근 과세당국은 기업경영 및 자금조달과정에서 대주주 및 경영진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한 후 이를 행사하여 얻게 된 이익에 대하여 거래 경위 및 이익의 취득 경위를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상증세법 제2조 제3항, 제4항의 '완전포괄주의 증여규정'을 확대 적용하거나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와 같은 일반규정으로 도피하여 과세하려는 경향이 있는바, 이 사건 판결은 확대된 과세범위를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하였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.

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● 최병선 파트너변호사	TEL. 02 316 4298	E-Mail. bschoe@shinkim.com
● 조 춘 파트너변호사	TEL. 02 316 4213	E-Mail. ccho@shinkim.com
● 이민현 변호사	TEL. 02 316 1639	E-Mail. i mhylee@shinkim.com
● 정인화 선임공인회계사	TEL. 02 316 4219	E-Mail. ihchung@shinkim.com

Chambers Asia-Pacific Awards 2014
South Korea Law Firm of the Year : Shin & Kim

